



제418회국회(정기회)
제3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유차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해제〉
■ 문정복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2007호)

2024. 9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박희석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1.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해제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문정복의원 등 10인
2. 제 안 일 : 2024. 7. 19.
3. 회 부 일 : 2024. 7. 22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환경친화적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로 충전 또는 주차 중에 화재가 발생하며, 고열로 인해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기 때문에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설치된 전기충전시설이 학생과 인근 주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함으로써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(안 제11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등).

Ⅲ. 검토의견

1.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의무 해제 (안 제11조의2제2항 단서 신설 등)

개정안은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
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를 해제하려는 것임.

[표 1] 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 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 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<u>충전시 설 및 전용주차구역</u> 을 설치하여야 한다.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전용주 차구역</u> -----.
1. ~ 4. (생략)	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 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 어야 한다. <단서 신설>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제1항제1호의 공공건 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 「유아교육</u>

③ ~ ⑫ (생략)	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③ ~ ⑫ (현행과 같음)
------------	--

현행법 제11조의2¹⁾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5²⁾에서는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대 이상인 시설 중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건물,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시설의 소유자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현행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호제사목에 해당되는 교육연구시설의 경우에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있음³⁾.

1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2)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제18조의5(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) 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(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, 이하 “총주차대수”라 한다)가 50개 이상인 시설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현황·보급계획·운행현황 및 도로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서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3조의5 및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
가 ~ 바. (생략)
사. 교육연구시설
아 ~ 거. (생략)

개정안은 이러한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화재 대응력이 미흡한 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생활공간인 점을 감안하여,

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충전시설 설치의무를 해제하려는 것으로, 최근 전기차 보급 및 전기차 충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라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.

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,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총 139건이고 이 중 전기차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전체 화재 발생 건수 대비 19%인 26건으로 나타났는데,

이는 전기차 화재 발생 총 건수에 있어 ‘운행중(46%)’ 또는 ‘주차중(26%)’ 건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.

3) 충전기 보급 누적 현황 (2024. 7. 5. 기준)

구분	전체		완속		급속	
공동주택시설	243,319	(68.6%)	239,269	(67.5%)	4,050	(1.1%)
상업시설	24,993	(7.0%)	17,709	(5.0%)	7,284	(2.1%)
교육문화시설	9,913	(2.8%)	8,089	(2.3%)	1,824	(0.5%)
관광시설	3,656	(1.0%)	1,615	(0.5%)	2,041	(0.6%)
공공시설	18,338	(5.2%)	10,030	(2.8%)	8,308	(2.3%)
주차시설	14,300	(4.0%)	6,284	(1.8%)	8,016	(2.3%)
근린생활시설	5,841	(1.6%)	4,082	(1.2%)	1,759	(0.5%)
휴게시설	1,998	(0.6%)	100	(0.0%)	1,898	(0.5%)
차량정비시설	1,997	(0.6%)	1,244	(0.4%)	753	(0.2%)
기타시설	30,168	(8.5%)	24,740	(7.0%)	5,428	(1.5%)
총계	354,523	(100%)	313,162	(88.3%)	41,361	(11.7%)

* 출처 : 환경부 통합누리집('24.7.5일 기준)

[표 3] 최근 3년 간 전기차 화재 발생 시점 현황 (2021년~2023년)

구분	2021	2022	2023	총계(%)
운행중	12	22	34	68(49%)
주차중	6	9	21	36(26%)
충전중	4	9	13	26(19%)
정차중	1	1	3	5(4%)
그 외*	1	2	1	4(3%)
총 계	24	43	72	139(100%)

* 주차중, 견인중 및 충전중일 때 다른 화재로부터 연소확대

※ 자료: 소방청

이와 같이 전기차 충전시설에서의 화재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, 특히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발생 사례⁴⁾와 같이 단순한 전기차 화재 사건의 경우에도 대형 재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음을 고려해 본다면,

개정안과 같이 유치원 및 초·중·고등학교에서 충전시설의 설치의무를 해제할 경우 화재 대피 등에 취약한 학생들로부터 화재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배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.

다만,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충전 중 화재 발생 우려로 인해 학교만을 충전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타 의무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및 전기차 보급 확대 정책의 일관성 등을 저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.

4) “인천 ‘전기차 화재’ 아파트 480세대 단전…때아닌 ‘피난살이’”(연합뉴스, 2024. 8. 2.)

문 의 처
02)6788-5466